

제439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9월16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7)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6)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7)

상정된 안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7) 1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6) 1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7) 1

(13시33분 개의)

○소위원장 임종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마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 신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의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7)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6)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7)

(13시34분)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의 3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사항입니다.

오늘 오전에 상정된 법안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가 조문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의 정비입니다.

현행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군사기밀 점유자에게 남아 있는 군사기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3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 앞에 있는 ‘그 지휘를 받은’ 그 문구를 삭제하고요. 황운하 의원안은 더 나아가서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기소와 수사 분리에 따라 압수물 관리는 사법경찰관의 업무라 생각돼서 검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소유지나 재판과정에서도 군사기밀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는 현행과 같이 남겨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 정비입니다.

이것도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군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와 복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게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2항도 역시 공소청 설립에 따라 문구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4항 역시 최근 개정된 형소법을 반영해서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주 의원님안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여기 지금 밖에 형소법에 검사가 제외되니까 군대도 군형법에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에서, 지금 황운하 위원이 제시한 것은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렇게 해서 군검사는 살려 놓는 거지요?

○민홍철 위원 예.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안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여기는 군검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든 게……

○전문위원 문성환 김병주 의원안이 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어느 안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문성환 김병주 의원님안이 대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바꾸는 게 뭐 있어?

○전문위원 문성환 ‘검사의 지휘를 받은’ 표현만 삭제되는 겁니다. 현행과 다른 점은……

○소위원장 임종득 ‘그 지휘를 받은’만 빼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문성환 예.

○한기호 위원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

○전문위원 문성환 예, 거기서 그 앞에……

○한기호 위원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군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렇지요?

○전문위원 문성환 예, 대등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나면 여기 민 위원님도 계시는데, 사실 군이라는 것이 폐쇄된 곳입니다.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밖으로 알려지는 게 전혀 없어요. 알려지는 게 없고 폐쇄된 사회에서 군사경찰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과거의 것을 그냥 놔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휘를 받는 게. 우리 이것은 여야를 다 떠나서, 민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홍철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임종득 예, 한 말씀하십시오.

○민홍철 위원 제안설명에도 하셨듯이 우리 형사소송 사법체계가 검사는 아마 헌법상에 의해서 존치합니다. 그러나 공소청범과 형사소송법 자체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지금 삭제한 상태입니다. ‘지휘’라는 말을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경우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휘’를 빼고 모든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 조항으로. 그러니까 ‘지휘’라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지휘 관계가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군검찰에서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사법경찰이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런 거지.

○민홍철 위원 이 군사기밀 보호법은 검사가 지금까지 지휘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군형법 내지는 군사법원법은 아직 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다만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사법원법이나 군형법이나 검

사와 협조 관계가 있거나 검사와 관련된 문제가 혹시 우리 일반 형사소송 사법체계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무관리관실에 한번 검토를 해 보라 그렇게 좀 차관께서 지시를 하셔서 가지고 군사법 관련된 문제 중에서 일반 검사와 관련된 지휘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잠깐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예,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심의하고 있는 것은 군사기밀 보호법 관련된 것이고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관련해서는 기존하고 똑같이 군검사가 군사경찰에 대해서 사건을, 정확한 법률용어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휘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민홍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군사법원법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즉 헌병, 기타 기무 수사, 보완수사 관련해 가지고 지휘 감독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상 협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체제로 우리 일반 형사소송법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일반 검사와 일반 공소청의 검사와 또는 중수청의 검사와 군사법원 관련된, 이 관련 속에서 혹시 기존에 또 일부 새로 바뀐 형사소송체계와 정합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 관련해서 민간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뀌면 직접수사가 불가능한데 군검사는 계속해서 수사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차관님, 이 내용이 지금 16조……

○소위원장 임종득 발언권 좀 받고 하세요.

○김성희 위원 법안소위라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그래요?

○김성희 위원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조항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군수사기관인데 어떤 군사기밀을, 이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한 상태에서 증거물을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병대든 어디든?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김성희 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군사기밀이니까 ‘너가 보관한 것을 파기해라’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검사도 하고 지금 군경찰도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원래 있는 위치에 군사기밀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원래 있는 군사기밀은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수사를 위해서 군기밀이

있어야 되는 지역을 이탈한 증거의 경우에 검사는 군경찰이든 이것은 놔두면 군기밀에 문제가 있으니 삭제를 하라라고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라야 되고 이것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 기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그런데 왜 하필 군사기밀 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 이것만 지휘를 받는 부분을 제외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를 좀 설명해 줘야지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존치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것은 뭐와 다르기 때문에 ‘그 지휘를 받은’을 빼야 되는지 이것만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알겠습니다.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상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그대로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다만 증거로 가지고 있던 군사기밀이 불필요해서 또는 유출의 우려가 있어서 삭제를 지시할 경우에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었는데 검사가 지금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검사’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아주 심플한 자구 수정입니다. 사법체계를 건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니까 군사법체계하고…… 지금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내가 궁금한 거나 한기호 위원님이 궁금해하는 답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여기만 이 지휘를 받는 부분을 빼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김병주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김병주 위원 한기호 위원님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혹시 군형법과 관련해서 군검사가 지휘하는 것을 빼는 것 아니냐 했는데, 군형법은 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검사 지휘, 지금 일반 검사가 지휘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 항목이 우리 군형법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봤을 때 이것하고 두 개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삭제하는 겁니다, 검사 ‘지휘’라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10월 1일 체계에 맞게 일반 검사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지금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민홍철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

○소위원장 임종득 한말씀 더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위원장님,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형법처럼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지휘 관계’ 이것을 빼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민홍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이해하셨지요?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저는 사실 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비밀을 삭제하든 안 하든. 그러면 일반 형사법에서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는데 이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거지. 왜 이것은 받지 않아도 되는가? 그러면 군의 특성상 이게 복수의…… 아무도 이 부분은 감시할 사람이 없는 거야. 검사를 놔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

○전문위원 문성환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한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문성환 이 사안 관련해서 한 가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저희가 검토했듯이 군사법원법이 2021년에 개정되어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역시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역시 지난 8월에 폐지되었고요.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검사의 지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군법에 대해서 한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했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문성환 예, 법사위 개정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해요?

○전문위원 문성환 군사기밀에 관한 수사는 특별……

○한기호 위원 아니, 그래도 수사와 검사와 관련된 거면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그러면 왜 우리 국방위에서 해요?

○전문위원 문성환 군사기밀에 관한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임종득 예.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이 군기법은 국방위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게 원칙인데 형소법인데 형소법에서 ‘지휘’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자구만 여기서 인용해 주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해를 하는데, 여기 김병주 위원님이나 민홍철 위원님도 전부 계시는데 사실 군법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원들의 생각하고 법사위원회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방위원이 의견 내는 채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큼은, 군기법이니까 국방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다른 군형법이나 이것은 전부 다 법사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법사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국방위원회 의견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홍철 위원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아무 논의도 없이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군의 특성을 법사위원들이 잘 모르시고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제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법사위원회에서 ‘이건 뭐 별 볼 일 없어’, 그냥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이라 해도 국방위원회가 우리 군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균형법 이든 이것은 다시 우리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한번 논의해서 구축을 해야 돼요.

○소위원장 임종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소위원장 임종득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민홍철 위원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데……

○소위원장 임종득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정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1대 국회 때 국방위원회와, 군사법원 관련된 문제 이것은 지휘권 행사와 굉장히 관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합동으로 관할하는 그런 기관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장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국회법을 바꿔야 됩니다. 국회법에 군사법원이 법사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원내대표께도 양당이 합의해서 국방위원회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동기관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한번 국회법 개정안을 내 보시지요.

○소위원장 임종득 예,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공동발의로 이렇게 발의해서 하는 건 어떻겠어요?

○소위원장 임종득 좋습니다.

○민홍철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감사합니다.

오늘 한기호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 주셨고 또 민홍철 위원님도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계기로 해 가지고 여야 한번 공동발의해서 군 관련된 부분은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같이 발의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지금 김병주 의원이 올린 안인데 올린 안대로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견들 한번…… 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를 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서 여기의 수사관들도 신고의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보시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청장과 1~9급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추가되는 거니까.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아니, 몰라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감사 그리고 수사 이런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7급 이상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아니에요?

○전문위원 문성환 재산등록 4급입니다.

○김병기 위원 보통은 4급인데 감사랑 수사가 예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 문성환 공직자 재산등록 말씀이십니까?

○김병기 위원 예, 공직자 재산등록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는 7급, 5급 이래서 급수가 다른데 수사랑 감사공무원이 7급 아니에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병무청 차장이……

○소위원장 임종득 차장님 말씀하십시오.

○병무청차장 김용무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직자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감사를 담당하는 직원도 재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병무청차장 김용무 예, 그런데 저희들 병역사항 공개법은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통해서 병역 자진이행 풍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4급 이상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공개랑 등록이랑 다르다.

○소위원장 임종득 김병기 위원님 되셨지요?

○김병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그러면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전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한기호 위원 잠깐만……

○소위원장 임종득 잠깐만,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아까 여야가 얘기가 됐는데 우선 전문위원께서 법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고, 우리 당의 유명하 위원님이 법에 대해서 아시니까 유명하 위원님하고 민홍철 위원님하고 두 분 공동 이름으로 발의하고 거기에 10명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다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하지요.

○김병기 위원 우리가 다 동의하면 되지요, 뭐.

○한기호 위원 왜냐하면 분명하게 해 놓고 해야지 그냥 하자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

○민홍철 위원 그러시지요.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 양당이 동의해야 될 건데, 원내대표가.

○김병기 위원 해야지요. 참 좋은 제안이네요.

○소위원장 임종득 좋습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참고로 현행 국회법에도 관련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병기 김병주 김성희 민홍철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전문위원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이두희

법무관리관 이광표

병무청

차장 김용무

사회복무국장 서승일